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9.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7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민간자본을 이용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7조)

다. 위원회의 기능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불필요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및 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에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구민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학교, 항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음.
- 1994년 관련법 제정과 함께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민간 투자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미 67조원이 넘는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 2012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으로 30건¹⁾의 민간 투자사업을 검토·추진중에 있었으며, 강남, 동대문, 마포, 양천구 등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도 현재 BTO²⁾ 방식의 민간투자가

1) 민자주차장 12건, 도로 8건, 도시철도 10건(중·경전철)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³⁾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구에서도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도로, 주차장, 컨벤션 및 문화복지시설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짐.

- 종합적인 검토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10항에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전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 건전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구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2) BTO[Build-Transfer-Operate](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10~30년)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3)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강남구에서는 논현1~3호, 대치1호, 청담1호 민자주차장, 동대문구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동대문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마포구에서는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양천구에서는 평면식 노외주차장 주차면 확대건설사업, 서대문구에서는 창천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계획)중에 있음.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18.>

3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